

「평창군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
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. 11. 17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1. 12. 19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1. 12. 20(화)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관광경제과장)

-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입과목을 추가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기업유치로 지역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일부 조문의 문구를 수정하여 명확히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방림농공단지의 분양과 함께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임.

- 주요 내용을 보면

-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세입과목을 보조금, 용자금, 분양용지 매각대금, 부지임대료 등으로 확대하고
 - 기타 조문과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농공단지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
-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분양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 1부